■ 세무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19. 3. 20.>

[ ] 세무사
[ ]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4일
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전화번호	
등록신청 내용	사무소명		전화번호	
	사무소 소재지		공직퇴임 세무사 여부	(여, 부) ※ 퇴임 시 직급:
	자격사항	「세무사법」 제3조제 호 . 세무사시험 제 회 합격(년도)	자격증 번호	

「세무사법 시행령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또는 「세무사법 시행령」 제3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[ ] 세무사 [ ]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세청장(한국세무사회장) 귀하

첨부서류	1. 이력서 1부 2.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(「세무사법」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제출합니다) 3. 사진(3.5㎝×4.5㎝) 2장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등록증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 (국세청, 세무사회)		처리기관 (국세청, 세무사회)		처리기관 (국세청, 세무사회)		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]